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도 및 신상품 출시 안내

2022.05.25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

□ 법률 제정 배경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 ('18.12.10日)를 계기로 제정

→ '21.1.26日 본회의 통과 및 공포

→ 공포 1년 후인 '22.1.27日 시행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50인 미만 사업장은 '24.1月 시행)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안전불감 조직 문화 등을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대비
법인과 별도로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1호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18년)
이천물류센터 화재 ('20년)

중대시민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
시설 또는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
외한다.

-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가 10명 이상 발생
-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자가 10명 이상 발생

가습기 살균제 사건 ('11년)
세월호 사고 ('14년)

주요 처벌내용

대상	중대재해	세부구분	처벌내용	비고
사업주 경영책임자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징벌적 손해 배상책임 (손해액의 최대 5배)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기관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2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시민재해	사망자 1명 이상	50억원 이하의 벌금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병자 10명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기타 법률비용 등을 담보하는 신상품 출시

예상되는 RISK 대비 필요

대법원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사고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동종누범 처벌 불원 ⇨ 합의가 전제
일반 양형 인자	행위		
	행위자 /기타	○ 보험 가입 ○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1) 피해자 및 가족손해배상금 마련

- 민사 및 징벌적 배상금 (단, 형사합의금 부담보)

2) 사고 후 신속한 법률 대응

- 적극적인 무죄 소명을 위한 방어비용

3) 형사처벌 시 감경 요인(예상)

- 대법원 양형기준 설정시, 통상 보험가입은 감경요인임

신상품 안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가입대상

□ 중대재해 처벌법 규율대상

법인/기관, 해당 법인/기관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
하는 자

경영책임자 등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통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

주요 보장내용(안)

“자세한 보장사항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본 상품(안)에서 징벌적 배상책임 및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은 최종 판결이 ‘고의’ 인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되며, 중복되는 타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비례 보상됩니다.”

“본 상품(안)은 중대재해 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최대 5배까지 부과된 배상책임액 및 민사방어비용 등)를 담보합니다. 단, 계약자의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최소 20% 설정 필수

②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특약)

피보험자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소, 고발, 진정, 인지, 내사 또는 입건 등에 의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변호사선임비용 등 형사방어비용을 보상합니다. 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고 주문이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인 경우나, 최종 상급심에서 판결에서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③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중대재해 관련 피해자(종사자 및 일반시민)에게 부담한 피보험자의 민사상 법률 배상책임 등 담보합니다.

④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이 공표된 경우 해당 위기의 영향을 관리 및 최소화하려는 목적의 컨설팅, 신문 및 TV에 사죄광고 게재비용, 위로금/위문품 비용 등 담보합니다.

신상품 안내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보상범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처벌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벌금과 과태료는 담보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담보	신상품 (기업중대사고배상책임보험)	국내근재보험	D&O (임원배상책임보험)	비고
법인, 기관, 사업주	민사 손해배상금	○ * 고의 면책	△ * 고의 면책	X	중복보험 비례보상 (독립책임액 기준)
	징벌적 손해배상금	○ * 고의 면책	X	X	
	중대사고 민사 방어비용	○ * 고의 면책	△ * 고의 면책	X	중복보험 비례보상 (독립책임액 기준)
	중대사고 형사 방어비용	△ * 무죄에 한함	X	X	
경영책임자 (임원 등)	민사 손해배상금	○ * 고의 면책	X	X	
	중대사고 민사 방어비용	○ * 고의 면책	X	△ * 특약가입시 담보 (직접적 신체손해 부담보)	중복보험 비례보상 (독립책임액 기준)
	중대사고 형사 방어비용	△ * 무죄에 한함	X	△ * 무죄에 한함 (직접적 신체손해 부담보)	중복보험 비례보상 (독립책임액 기준)

주) 신상품의 징벌적배상책임 특약 및 형사방어비용 특약 가입 가정
삼성화재 상품 기준

FAQ

1.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대상인가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 등에 정의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됩니다.

2. 하청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등에 근거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 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제4조)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신상품은 주요 보장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벌금 및 과태료를 제외한 배상책임 및 방어비용이 아래와 같이 보장됩니다.

단, 징벌적 손해 배상책임, 중대사고 형사방어비용 및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은 은 반드시 특약으로 추가 가입하셔야 합니다.

중대사고	민사 배상 및 방어비용	징벌적 배상책임 (특약)	형사 방어비용 (특약)	중대사고 위기관리실행비용 (특약)	벌금 등
보장여부	○ *단, 고의 면책	○ *중대재해처벌법상 징벌적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은 경우 (단, 고의 면책)	○ *무죄인 경우 限	○ *단, 고의 면책	X

4. 형사 방어비용(특약)의 상세 보장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중대재해 발생후 중처법 위반 혐의로, 피보험자가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는 형사절차가 발생하여 부담하는 형사방어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단, 소급보장일자 이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건이며,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또는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되어야 합니다.
- 또한 재판에 회부된 후 피고인으로서 판결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에도 보상합니다. 단, 상급심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의 최종 판결이 무죄가 아닌 경우에는 모든 심급별 형사방어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급심의 최종 판결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심급 中 무죄판결이 아니어서 보상받지 못하였던 형사방어비용도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기업의 주요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제9조 등

- 재해예방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 정부·지자체의 개선, 시정사항 이행

5. 기타 특약 내용

· 공중교통수단 보장확대 특별약관

중대재해처벌법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공중교통수단으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

* 공중교통수단 정의(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5항)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라목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의 **여객선**, 「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객차**

· 중대()재해만을 위한 보장 특별약관

중대산업재해 or 중대시민재해 中 하나의 담보만 가입을 원하는 경우, 해당 특약을 가입(보험료 할인 有)

6. 피보험자의 범위

·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특약: (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

민사상 배상책임, 형사방어비용 특약: (사업주 및) 법인 또는 기관 및 경영책임자 등

*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주요 면책사항

- **재물손해**, 재물의 분실 또는 도난(그로 인한 재물의 사용불능 손해를 포함 합니다)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채용, 고용, 해고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부당한 행위로 기인한 배상책임
-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例 : 산재보험) 에서 보상하는 손해

보험료 산출 및 설계時 고려사항

→ 아래의 산출 체계로 재보험자 협의요율(개별 구득) 적용 예정

1. 보험료 산출체계: 업종군별/ 보상한도별 기본 요율 + 규모(직원수, 매출액 등)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 하는 체계

2. 필요 정보

-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을 가입하기 위해, 사전확인되어야 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 설문서상 아래 항목별 답변 후, 심사 요청前 설문서 스캔첨부하여 심사요청 주시면 됩니다 (설계화면상 아래 항목 반영 예정)
 - 총자산 / 매출액 / 연간임금총액 / 업종 (주요 사업내용)
 - 근로자수 및 근로자중 생산직 비율 / 도급, 용역 위탁계약에 대한 상세 사항
 - 위험관리 체계 점검항목 (1. 안전관리 책임자 유무 2. 주기적 안전관리 교육 유무 3. 최근 5년내 중대재해 관련 사고 유무)

3. 기타 유의사항

- 아래 해당업체에 대해, 심사時 인수 제한 가능성 高
 - 주요 업종 : 건설업, 광업, 발전, 석유화학 & 내부위험관리 체계 미비
 - 생산직 근로자수 300人 초과
 - 생산직 비율 50% 초과

알아두실 사항

• 가입전 필수 확인사항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사항

삼성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해 모집종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집종사자에 관한 사항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직원, 설계사, 대리점, 보험중개사를 말하며 보험회사 직원을 제외한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계약해지 후 다른 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급금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분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다만,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알아두실 사항

• 계약의 무효에 관한 사항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이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함.)

②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에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체결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①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금융감독원 보험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 ③ 사고접수, 보험처리 등 보험계약 관련 문의(삼성화재해상보험)
→ 전화 : 1588-5114 인터넷 : www.samsungfire.com

• 보험상당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TEL : 1588-5114 / 인터넷 : www.samsungfire.com)>고객센터>전자민원창구)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332, 인터넷 : www.fss.or.kr)

※ 본 자료는 2022년 5월 기준임

※ 본 안내서의 상품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내용은 약관을 참고해 주십시오.

※ 보험계약 청약시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피보험자, 특별약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하여 읽어보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